

	휴먼케어봉사활동 교과목과정 규정	표준번호	교무행정 6-4-1
		제정일자	1997. 3. 1
		개정일자	2015. 1.26

제1조(목적) 대학의 교육목표와 비전실현을 위해 휴먼케어 전문직업인으로서 갖춰야 할 인성과 봉사정신 함양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.(개정 2015.1.26)

제2조(운영) ①봉사활동은 대학재학중 방과 후나 휴일 및 방학기간 중에 실시하며, 매학기 신청이 가능하다.

② (삭제 2012.12.11)

③봉사활동 교과목 지도교수는 수강신청자에 대해 사전 교육을 통해 공인인증기관인 자원봉사센터에 회원으로 등록하도록 지도한다.(개정 2012.12.11, 2015.1.26)

④ (삭제 2012.12.11)

⑤ (삭제 2012.12.11)

⑥ (삭제 2015.1.26)

⑦ (삭제 2015.1.26)

⑧교학지원처는 매 학기 봉사활동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하며, 수강신청전까지 개설 현황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.(신설 2015.1.26)

제3조(수강신청) ①봉사활동 학점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기초 소정의 수강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.

②재학 중에 실시한 사회봉사활동은 해당학기에 수강신청한 후 학점으로 취득할 수 있다.(개정 2012.12.11.)

③봉사활동교과목은 학년 구분없이 수강신청 가능하며, 수업시간표는 토요일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(신설 2015.1.26)

제4조(이수구분)

①이수구분은 교양과목으로 한다.

②해당 교과목은‘휴먼케어봉사’으로 한다.(신설 2015.1.26)

제5조(시수 및 학점) ①봉사활동시간은 60시간으로 사전교육 2시간과 마무리교육 2시간을 포함하며 봉사활동시간을 이수하면 2학점으로 인정한다.(개정 2012.12.11)

②봉사활동학점은 졸업이수학점에 포함되며 평균 및 평점은 산출하지 아니한다.

③출퇴근 봉사활동 및 숙식 봉사활동은 모두 1일 8시간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하며, 별도로 수용기관에서 명시하여 통보하는 시간은 그대로 인정한다.

④봉사활동시간 인정기간은 수강신청 학기 기간을 포함하여 재학기간 중으로 한다.(신설 2015. 1.26)

제6조 (삭제 2012.12.11)

제7조(실적물 제출) 수강신청자는 해당학기말 봉사활동내역이 기록된 증빙자료를 지도교수에게 제

출한다.(개정 2012.12.11. 2015.1.26)

제8조(성적평가) ①봉사활동에 대한 성적은 봉사활동 교과목 지도교수가 성적입력기간중 종합정보 시스템에 입력한다.(개정 2012.12.11)

② (삭제 2015.1.26)

③ (삭제 2012.12.11)

④성적평가는 “P(PASS)”로 처리한다.(신설 2015.1.26)

제9조(봉사기관) 대학 봉사담당 주관부서가 인증하는 활동프로그램 및 공인인증기관인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하는 봉사 활동만 인정한다.(개정 2012.12.11, 2015.1.26)

제10조(봉사활동 지도교수)

①봉사활동교과목 지도교수는 교학지원처에서 지정한다.(개정 2012.12.11)

②담당교수의 교과목 수업 인정시수는 1시수로 한다.(신설 2015.1.26)

제11조(시행)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

2. (학교장 명칭변경) 학칙 개정(2009.2.20자)으로 본 규정 중 학교장의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(직제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) 본 규정 중 “학사운영처(장)”을 “교학지원처(장)”으로 변경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